

大田直轄市教育委員會議事局的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 관한條例案

| | |
|----------|-----|
| 議案 番號 | 145 |
|----------|-----|

提出年月日：1992年 7月 24日

提出者：大田直轄市教育監

1. 提出理由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이 改正 ('91. 12. 31 法律 제4,473호)됨에 따라 大田直轄市教育委員會에 議事局을 設置하고, 그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條例로 定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教育委員會에 議事局을 設置함. (案 第2條)

나. 議事局에 議事局長을 두며 地方書記官으로 補하도록 함. (案 第4條)

다. 議事局에 總務擔當官 및 議事擔當官 각 1인을 두며, 각 擔當官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함. (案 第4條)

라. 議事局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13명으로 하며, 職級別 定員은 大田直轄市教育委員會 및 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의 定員에 관한規則으로 定하도록 함. (案 第5條)

3.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따로붙임

나. 教育委員會의 事務職員 關聯規程의 改正前後 對比表： 따로붙임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이하 “의사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국)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국을 둔다.

제3조(직무) 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와 운영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조직) ①의사국에 국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의사국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의사국에 총무담당관 및 의사담당관 각 1인을 두며, 각 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사무직원의 정수)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參 考 事 項

가.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91. 12. 31 法律 제4,473호)

제22조(議事局的 設置등) ①教育委員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議事局을 두고, 議事局에는 議事局長과 職員을 둔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議事局長 및 職員(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 이라 한다)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한다.

③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定한다.

④事務職員은 教育委員會의 議長과 協議하여 教育監이 任命한다.

나. 教育委員會의 事務職員 關聯規定의 改正前後 對比表

| 從 前 (法律 제4,347호) | 現 行 (法律 제4,473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教育委員會에 議事擔當官 1인과 약간명의 職員을 둠 ○ 議事擔當官과 약간명의 職員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하고, 그 定數와 職級은 教育規則으로 정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教育委員會에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議事局을 설치하고, 議事局에 議事局長과 職員을 둠 ○ 議事局長과 職員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함 ○ 議事局長과 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함 |

大田直轄市 教育委員會 議事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案

審 查 報 告

1992 年 7月 28 日
文教·社會委員會

1. 審 查 經 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2年 7月 24日,
大田直轄市 教育監
- 나. 回 附 日 字 : 1992年 8月 5日
- 다. 上 程 日 字 : 第13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1次 文教·社會委員會 (1992. 8. 26)
上程, 審查, 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行政管理擔當官)

가. 提 案 理 由

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이 改正('91. 12. 31. 法律 第4,473號)됨
에 따라 大田直轄市 教育委員會에 議事局을 設置하고, 그 事務職
員의 定數等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條例로 定하려는 것임.

나. 主要 骨 子

- (1) 教育委員會에 議事局을 設置함. (案 第 2條)
- (2) 議事局에 議事局長을 두며 地方書記官으로 補하도록 함. (案 第 4條)
- (3) 議事局에 總務擔當官 및 議事擔當官 各 1人을 두며, 各 擔當官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補함. (案 第 4條)
- (4) 議事局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13名으로 하며, 職級別 定員은 大田直轄市教育委員會 및 教育監 所屬 地方 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規則으로 定하도록 함. (案 第 5條)

3. 專門委員 檢討 報告 要旨 (專門委員:金鎮鎬)

- 이 條例案은 教育委員會에 議事局을 設置할 수 있도록 地方 教育自治에 관한 法律이 改正('91. 12. 31. 第4,473號)됨에 따라 大田直轄市 教育委員會에 議事局을 設置하고 事務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려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 本 條例案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 첫째, 本 條例案의 制定目的, 議事局의 職務등을 案 第 1,2,3 條에 規定하고 있는바, 教育委員會의 會議와 運營등에 關聯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議事局을 設置한다는 것을 그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음.
 - 둘째, 議事局의 組織 및 事務 職員의 定數에 관한 事項 (案 第 4條, 5條)으로써 地方書記官인 議事局長과 總務, 議事등 2 擔

當官을 두도록 하였으며, 事務職員의 定數를 13名으로 規定하고 있음.

- 以上에서 報告드린 「大田直轄市 教育委員會 議事局의 設置 및 事務 職員의 定數等에 관한 條例案」은 本格的인 地方化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폭증되는 行政 欲求를 收用하고 教育委員會의 圓滑한 業務 處理를 위하여 必須的으로 設置되어야 할 것이며,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음

| 質 疑 | 答 辯 |
|---|--|
| (朴 炳浩 議員) ○ 事務職員의 定數가 13名으로 되어 있는데 特別한 事由가 있는가? ○ 운전기사는 꼭 必要한가? | ○ 他市·道와의 比較 및 事務量 등을 勘案한 適正 人員임. ○ 業務用 車輛은 있으나 기사가 없음 |
| (南鎔浩 議員) ○ 그간 議事局長이 없었는가? ○ 上位 職級이 많아 실제로 일 할 사람이 不足한 기형적인 직제가 된 것 같음 | ○ 議事擔當官制度에서 議事局으로 격상한 것임. |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小 委 員 會 審 查 報 告 要 旨 : 없 음

7. 小 數 意 見 聽 取 : 없 음

8. 審 查 結 果 : 原 案 大 로 可 決 함 .

9. 體 系 字 句 審 查 內 容 : 없 음

10.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